

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·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사유

2006. 1. 11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
- 나.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규정함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
- 나. 입법예고 : 2006. 3. 27 ~ 4. 17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4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,
- 금번에 지방자치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으로서 이에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
-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